



[별지 제89호의 2서식]

구분 : 고객용(영수증 겸용)		자동차점검·정비명세서				일련번호 : B0300020190618000069							
차량 소유자	등록번호	74무6234	차명(차종)	그랜드스타렉스	주행거리	78,465 km							
	등록년월일	2017-05-31	점검·정비 의뢰일자	2019-06-18 11:14									
정비 사업자	사업자등록번호	210-85-10999	정비업등록번호	01-1112-000343	업태	서비스							
	업체명 (대표자)	북부서비스센터 이원희	주소	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76 방학동	자동차 정비								
	점검·정비완료날짜	2019-06-18	출고일자	2019-06-18	(전화번호)	02-3499-8300							
	점검·정비내역	DPF제상및상태확인 이상무 등		추가정비동의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의								
작업내용		구분				수량		부품 단가		계		공임	
DPF제상및상태확인 이상무													
북부E코시운전													

부품	0	공임	0	소계	0	VAT	0	총계	0
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	---	----	---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2019년 06월 18일

작성자 : 김대호

대표이사

이원희



- 정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.
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)
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 부터 90일 이내
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 부터 60일 이내
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 부터 30일 이내
-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) : A
나. 재제조품 : B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 : C 라. 수입부품 : F
※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※ 부가세 포함,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. / 경리수납인 및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.